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672
----------	-----

2023년 4월 19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3월 29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23년 4월 3일
다. 상정일자 :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23년 4월 19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서울특별시장)

가. 제안이유

청계천시민위원회는 2005년 복원된 청계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이용사항에 대한 자문을 목적으로 구성되었으나, 청계천 복원사업이 18년 경과된 현시점에서 신규사업 발굴 및 협의 사항이 없고 시설물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 미운영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1) 청계천시민위원회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함.(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3. 검토보고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 개요

- 본 개정안은 서울시(이하 “시”)가 청계천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구성 당시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존치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표 1] 개정안 주요골자(안 제12조 ~ 제14조의2, 안 별지서식)

현 행	개 정 안
<p><u>제12조(청계천시민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청계천의 유지관 리 및 청계천 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 기 위하여 「청계천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청계천 이용·관리를 위한 장단기과제 수립</u> 2. <u>시민과 함께 하는 청계천 이용 추진상황 평가</u> 3. <u>청계천의 오수 및 수질 관리, 물순환시스템 개선 등 생태환경 개선</u> 4. <u>수표교, 오간수문 등 복원</u> 5. <u>그 밖에 청계천 주변거리 활성화 등 시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항</u> <p><u>② 위원회는 위원장 3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u></p> <p><u>③ 위원장은 행정2부시장과 위촉위원 중 호선하는 자 2 인으로 한다.</u></p> <p><u>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당연직 위원 : 청계천 업무 관련 실·국·본부장</u> 2. <u>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u> 3. <u>공원환경, 생태, 자연성 회복, 수질, 도시, 역사 등에</u> 	<p><u><삭 제></u></p>

관한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4회 이내로 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하천관리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청계천관리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삭 제>

제14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위원의 수를 10인 이내로 하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각 분과위원회에는 분과위원장을 둔다.

③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생태·환경 분과위원회
2. 역사·문화 분과위원회
3. 도시·제도 분과위원회

④ 삭제

<삭 제>

제14조의2(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안건의 심도 있는 심의와 분과위원회간의 의견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삭 제>

청계천시설사용허가신청서				
행사 명칭				
사용 목적				
사용 일시		년 월 일() 시 분 ~ 시 분(시간 분)		
주최자 또는 주최단체의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	FAX	
	성명 (단체명)	생년월일	직업	
연락 책임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		
	성명 (단체명)	생년월일	직업	
사용 인원		사용장소	㎡(평)	
행사 내용				
서울특별시청계천이용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용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구비서류 : 1. 행사계획서(사용장비, 시간계획 등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재) 2. 사용 위치도(현장답사 후 평면도 표시) 3. 시설물설치내역 및 원상복구계획서(기타시설물 설치시)				

■ 청계천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

- 시는 '05. 10월 복원된 청계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생태하천으로의 복원과 이용시설 개선 등의 시책사업을 시민과 함께 논의하고자 '12. 3월 위원회를 출범하였으며, 같은 해 9월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설치 근거 및 운영 방법 등을 마련하였음.
- 현행 위원회를 살펴보면, 3개의 분과위원회(생태·환경, 역사·문화, 도시·제도)로 나뉘어 각 분과별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되며, 정기회의는 연 4회 이내,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혹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고 있음.

[표] 제6기 청계천시민위원회 위원 내역 ('18. 12. 11일 ~ '20. 12. 10일)

연 번	소속 및 직위	성 명	비고
1	서울시 행정 2부 시장	김 ○ ○	당연직
2	서울시의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정 ○ ○	
3	서울시립대 건축학부 교수	권 ○ ○	연임
4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신 ○ ○	
5	성균관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학과 교수	박 ○ ○	
6	호남대학교 생물학과 교수	고 ○ ○	
7	서울대학교 환경계획학과 교수	윤 ○ ○	
8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	한 ○ ○	연임
9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국장	맹 ○ ○	
10	한경대학교 토목안전환경공학과 교수	백 ○ ○	연임
11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	최 ○ ○	당연직
12	서울시 푸른도시국장	최 ○ ○	당연직
13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고 ○ ○	연임
14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교수	김 ○ ○	
15	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 연구원	이 ○ ○	연임
16	명지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이 ○ ○	
17	문화연대 사무처장	최 ○ ○	연임
18	평화시장 상인연합회 회장	이 ○ ○	연임
19	서울시립대 국사학과 교수	이 ○ ○	
20	서울시 문화본부장	유 ○ ○	당연직
21	서울기술연구원 기술개발본부장	김 ○ ○	
22	경성대학교 교수	이 ○ ○	
23	국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이 ○ ○	
24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연구위원	맹 ○ ○	연임
25	안스디자인 대표	안 ○ ○	연임
26	경희대 환경조경디자인학과 교수	김 ○ ○	연임
27	사) 활짝미래연대 대표	김 ○ ○	
28	호서대학교 건축토목공학부 부교수	정 ○ ○	
29	서울시 도시재생실장	류 ○	당연직

- 위원회의 운영실적은, '12년 17건, '13년 27건, '14년 15건으로 3년간 회의가 활발히 개최되었으나, '15년부터 회의 건수가 급격하게 감소하여, '21년부터는 위원회를 구성한 실적이 없음(〔표〕 참조).

[표] 청계천시민위원회 운영실적 ('12 ~ '23년)

('23. 4. 7. 기준)

구 분	계		전체회의 (소위원회 포함) (하천관리과)		분과회의					
					생태환경 (자연생태과)		도시제도 (도심권사업과)		역사문화 (역사문화재과)	
	개최건수	안건수	개최건수	안건수	개최건수	안건수	개최건수	안건수	개최건수	안건수
계	79	124	37	74	15	18	15	19	12	13
'12년	17	38	7	27	4	4	2	2	4	5
'13년	27	31	12	14	5	6	3	4	7	7
'14년	15	24	7	13	3	5	4	5	1	1
'15년	5	11	4	9	-	-	1	2	-	-
'16년	5	8	3	5	-	-	2	3	-	-
'17년	5	5	2	2	1	1	2	2	-	-
'18년	1	1	1	1	-	-	-	-	-	-
'19년	2	2	-	-	1	1	1	1	-	-
'20년	2	4	1	3	1	1	-	-	-	-
'21년	-	-	-	-	-	-	-	-	-	-
'22년	-	-	-	-	-	-	-	-	-	-
'23년	-	-	-	-	-	-	-	-	-	-

[표] 청계천시민위원회 예산 현황 ('12 ~ '23년)

(단위 : 천원)

구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편성	-	50,000	40,000	40,000	40,000	40,000	21,000	21,000	21,000	21,000	31,500	45,000
집행	1,933	30,143	22,886	19,215	13,655	5,840	3,530	900	1,300	-	-	-

※ '12년 : 예산 미편성(사무관리비 등 집행) / '13~'17년 : 예산 별도 편성(청계천시민위원회)
 '18~'23년 : 예산 통합 편성(부서내 각종 위원회 -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등)

■ 개정안 주요골자별 검토의견

가. 청계천시민위원회 폐지 관련

- 개정안 제12조(청계천시민위원회 설치), 제13조(회의), 제14조(분과위원회), 제14조의2(소위원회)는, 시가 위원회를 폐지하고자 조례에 명시된 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회의 방법 등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 행정안전부가 ‘22. 7월 수립한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표] 참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위원회 중 최근 3년간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에 대해 정비토록 요청¹⁾함에 따른 서울시의 후속 조치에 해당함.
- 참고로, 시는 자체적으로 수립한 「2022년도 위원회 정비 및 운영 개선 계획」²⁾ 등을 통해 개최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에 대하여는 관련 실·국 등에 조속히 정비토록 권고³⁾한 상태임.
- 이에 따라 시는 위원회가 담당하던 청계천 유지관리 등에 대한 자문역할을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⁴⁾(이하 “수자원위원회”)로 일원화하겠다는 입장임.

1) ‘2022년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협조 요청(7월)’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3077 (2022. 8. 12.)

2) 「2022년도 위원회 정비 및 운영개선 계획」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2022. 6.)

3) ‘각종 위원회 정비추진 협조 요청(10월 기준)’ 조직담당관-27807 (2022. 10. 19.)

- 각 부서의 정비대상(폐지, 비상설화, 통폐합) 위원회는 조속히 정비를 추진할 것 권고

4)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① 지역 수자원정책에 관한 제29조 제1항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를 둔다.

[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 ('22. 7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

회의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하여 지자체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효율성 제고

I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위원회 수) '21.12월 기준 29,474개로, 매년 지속 증가*
* 23,500개('17년) → 24,874개('18년) → 26,395개('19년) → 28,071개('20년)
- (설치근거) 법령 65.3%(의무설치 55.7%, 임의 9.4%), 조례 30.4%, 기타 4.6%
- (회의개최) '21년 총 110,903회로 위원회별 평균 3.8회 개최
- (기타) 위원 수는 총 400,046명으로 위원회별 평균 13.6명 구성, 위원회 운영경비는 약 456억원으로 위원회별 평균 154.8만원 소요

□ 문제점

- (회의실적 저조) 최근 1년간 회의 미개최 위원회는 전체 위원회 수의 24.2%(7,146개), 최근 3년 연속 미개최 위원회는 12.3%(3,639개)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회의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비율)	22.5%	23.5%	23.6%	25.6%	24.2%

- (비효율 운영) 유사중복기능 수행 위원회 다수 존재, 위원회 설치 근거가 법령으로 되어 있는 경우 지자체 스스로 정비 곤란

II 위원회 정비 방안

< 기본 방향 >

정비 대상	정비 방안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td> <td style="text-align: center;">신설 위원회</td> </tr>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 법령상 임의위원회/ 조례상 위원회 </td> <td style="text-align: center;"> 미개최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간 미개최 · 1년간 미개최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비효율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능 유사중복 · 가능 독립 * 연 3회 미만 개최, 구성·운영 개선 필요 위원회 등 </td> </tr> </table>		신설 위원회	법령상 임의위원회/ 조례상 위원회	미개최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간 미개최 · 1년간 미개최 	비효율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능 유사중복 · 가능 독립 * 연 3회 미만 개최, 구성·운영 개선 필요 위원회 등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신설 최대한 억제</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폐지</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위원회 활성화 또는 정비 계획 수립</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통폐합</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목적달성) 폐지 (한시필요) 존속기한 설정 (내부안건) 협의체 전환 (존속필요·안건少) 비상설화 </td> </tr> </table>	신설 최대한 억제	⇒ 폐지	⇒ 위원회 활성화 또는 정비 계획 수립	⇒ 통폐합	(목적달성) 폐지 (한시필요) 존속기한 설정 (내부안건) 협의체 전환 (존속필요·안건少) 비상설화
	신설 위원회										
법령상 임의위원회/ 조례상 위원회	미개최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간 미개최 · 1년간 미개최 										
	비효율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능 유사중복 · 가능 독립 * 연 3회 미만 개최, 구성·운영 개선 필요 위원회 등										
신설 최대한 억제											
⇒ 폐지											
⇒ 위원회 활성화 또는 정비 계획 수립											
⇒ 통폐합											
(목적달성) 폐지 (한시필요) 존속기한 설정 (내부안건) 협의체 전환 (존속필요·안건少) 비상설화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 text-align: center;"> 법령상 의무설치 위원회 (행안부-해당부처, 법령정비 요청) </td> <td style="text-align: center;"> · 미개최 · 비효율 </td> </tr> </table>	법령상 의무설치 위원회 (행안부-해당부처, 법령정비 요청)	· 미개최 · 비효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 (사전) 사전협의제도 활성화</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사후) 폐지 또는 임의규정화 검토</td> </tr> </table>	⇒ (사전) 사전협의제도 활성화	⇒ (사후) 폐지 또는 임의규정화 검토						
법령상 의무설치 위원회 (행안부-해당부처, 법령정비 요청)	· 미개최 · 비효율										
⇒ (사전) 사전협의제도 활성화											
⇒ (사후) 폐지 또는 임의규정화 검토											

나. 청계천시민위원회 폐지에 따른 영향 분석

< 삭 제 >

제12조(청계천시민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청계천의 유지관리 및 청계천 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청계천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청계천 이용·관리를 위한 장단기과제 수립
 2. 시민과 함께 하는 청계천 이용 추진상황 평가
 3. 청계천의 오수 및 수질 관리, 물순환시스템 개선 등 생태환경 개선
 4. 수표교, 오간수문 등 복원
 5. 그 밖에 청계천 주변거리 활성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3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행정2부시장과 위촉위원 중 호선하는 자 2인으로 한다.
-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청계천 업무 관련 실·국·본부장
 2.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공원환경, 생태, 자연성 회복, 수질, 도시, 역사 등에 관한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 ⑤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현행 위원회의 자문역할을 살펴보면, 안 제12조제1항의 각 호와 같 으며, 우선 제1호 ‘청계천 이용·관리를 위한 장단기 과제 수립’의 경 우 시가 ‘14. 3월 ‘청계천 역사성 및 자연생태성 회복 마스터플랜 수 립’을 하고 ‘18. 12월 ‘청계천 시설물 유지관리 마스터플랜’⁵⁾(〔표〕 참 조)을 통해 청계천 이용·관리를 위한 장·단기 과제를 수립한 바 있음.

5) 청계천 이용·관리를 위한 장단기 과제 수립 내역

① 청계천 역사성 및 자연생태성 회복 마스터플랜 수립(‘13.3~‘14.3, 서울연구원)

- 비전 : 청계천 역사성 및 자연생태성 회복
- 기본방향 및 전략 설정

기본방향	전략
역사문화 계승하는 청계천(역사문화 분야)	· 청계천 문화유적 회복 · 청계천변 하천 문화 활성화
자연생태가 살아 숨쉬는 청계천(생태환경 분야)	· 도시가 숨쉬는 생태환경 회복 · 하천 스스로 발전
도심속 활력공간 청계천(도시제도 분야)	· 시민발길이 편한 보행환경 조성 · 청계천 관리를 위해 지역주민과의 연대

② 청계천 시설물 유지관리 마스터플랜(‘18.3~‘18.12, 서울연구원)

- 비전 : 시민수요 부응과 이용안정성 지속하는 관리계획
- 기본방향 및 목표 설정

기본방향	목표
하천기본계획의 공간지구 기준 준수	노후시설물의 예방적 사전 유지관리 체계 전환
기존 마스터플랜의 역사문화구간, 자연생태구간 기준 만족	시민수요 부응 시민편의와 안전확보
청계천 구간별 이용 시민 수요 부응	청계천 자연생태성 확보

- 「하천법」 제25조⁶⁾에 따르면 하천관리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즉, 시장과의 협의를 통해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5년
 단위 변경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청계천의 경우 ‘중랑천권역 하천
 기본계획’⁷⁾에 포함⁸⁾되어 있으므로 위원회가 폐지되더라도 장·단
 기 과제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사료됨.

-
- 6) 「하천법」 제25조(하천기본계획) ① 하천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의 이용, 주민친화적 활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보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은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등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하천관리청인 하천에 대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 ④ 하천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 ⑧ (생략)
 - 7) ‘중랑천권역(서울특별시) 하천기본계획(변경) 보고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14호 (2013. 1. 17.)
 - 8) 「하천법 시행령」 제24조(하천기본계획의 수립) ② 하천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하천기본계획의 목표
 2. 하천의 개황(概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유역의 특성 등 일반현황
 - 나. 강우·기상 등 자연조건
 - 다. 하천의 수질 및 생태
 - 라. 수해 및 가뭄의 피해현황
 - 마. 하천수의 이용현황
 - 바. 하천유역의 지형·지물 등을 파악하기 위한 측량기준점에 관한 사항
 3. 제방·댐·저류지·홍수조절지·방수로 등 홍수방어시설의 홍수방어계획
 4. 토지이용계획 등에 따른 홍수방어계획
 5. 홍수방어계획의 연차별 시행 방안
 6.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기본홍수량(제방·댐·저류지·홍수조절지·방수로 등 홍수방어시설의 홍수조절계획을 반영하지 아니한 자연상태의 홍수량을 말한다) 및 홍수량의 배분에 관한 사항
 - 나. 계획홍수량
 - 다. 계획홍수위
 - 라. 계획하폭 및 그 경계
 - 마. 하도(河道)와 유황(流況)의 개선
 7. 하천구역 및 홍수관리구역의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항
 8. 자연친화적 하천 조성에 관한 사항
 - 8의2.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하천의 환경보전과 적절한 이용에 관한 사항

- 다음으로, 안 제2호 ‘시민과 함께 하는 청계천 이용 추진상황 평가’는 시가 ‘05년부터 자체 조사를 통해 매년 청계천에 대한 연간 방문객 및 시민 만족도를 조사([표] 참조)하고 있고, 청계천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민간단체와 함께하는 ‘청계아띠⁹⁾, 시민과 함께 봉사하는 ‘일석삼조 봉사활동¹⁰⁾’ 등을 매년 운영하고 있는데,
 - 청계천에 대한 종합 만족도를 살펴보면 작년기준(‘22년) 86.5%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 시민 민원해결 등을 위한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 게시판을 항시 운영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위원회 폐지 여부와 상관없이 원활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표] 청계천 연간 방문객 및 시민만족도 현황

① 청계천 방문객 현황								(단위 : 천명)	
구분	2005년	~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방문객	11,840	~	12,565	12,978	8,726	9,746	11,709		

② 청계천 시민 만족도 조사										
- 서울시(2006~2008), 행정안전부(2009년 이후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종합만족도	69.5	69.9	73.2	65.5	71.0	78.8	75.1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종합만족도	82.1	86.7	87.0	87.7	84.4	85.0	88.9	87.0	83.5	86.5
방문시민	81.8	81.8	86.0	85.6	81.0	81.8	81.8	87.0	83.5	85.2

9) 청계아띠 : 청계천을 지키는 아름다운 띠라는 뜻으로 2016년도 구성, 민관상생협력을 통한 사회공헌활동
 - 청계광장 거리화단 가꾸기, 쓰레기줍기, 생태교란종 제거 등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2년
운영횟수	69회	65회	4회	29회
참여인원	1,118명	1,47명	119명	701명

10) 일석삼조(봉사,힐링,재미) 봉사활동 : 2016년도 구성, 공단직원 및 시민참여
 - 4~10월(월1회), 청계광장~중랑천 합류부,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등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운영횟수	10회	10회	-	-	5회
참여인원	1,012명	1,302명	-	-	402명

- 안 제3호 ‘청계천의 오수 및 수질 관리, 물순환시스템 개선 등 생태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시가 수질 및 악취관리에 대한 기준은 환경부 기준을 준수하여 관리(〔표〕 참조)하고 있으며, 생태환경 개선을 위해서 ‘14~‘18년 48억 55백만원, ‘20년 돌무더기(어류서식처 식생) 및 여울보 개선사업 6,500만원, ‘21년 돌무더기(거석수제11)) 조성사업 400만원 등의 사업들을 추진하였고,
 -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들의 성과로 인해 청계천 생태환경 조성은 일 정부분 궤도에 올라 조성에서 관리 및 운영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판단되며,
 - 청계천의 수질관리 및 물순환시스템 개선은 수자원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에도 해당12)하여 추후 동 자문사항에 대해서는 수자원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짐.

[표] 청계천 수질 및 악취관리 현황

① 수질관리

- 청계천 수질관리
 - 측정지점 : 3개소(모전교, 무학교, 중랑천합류전), 월 1회(보건환경연구원)
 - 목표기준
 - 환경부 고시에 의거 BOD 2이하, 총인 0.04이하 목표 관리(2025년 달성목표)
 - 공급용수 관리기준: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수질 및 수생태계 하천 생활환경 1b등급
 - 2022년 수질측정결과

(단위 : mg/L)

구 분	1b 등급 기준	청계천1 (모전교)	청계천2 (무학교)	청계천3 (중랑천합류전)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2 이하	0.5	0.9	1.6
T-P(총인)	0.04 이하	0.019	0.031	0.083

11) 거석수제는 돌을 모아 섬처럼 쌓는 것으로 청계천내 새벽다리부터 다산교까지 총 16곳에 설치함.
 12) 「서울특별시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1조(목적) ②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수자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2. 수자원의 조사 및 수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3.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기능으로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4. 지방하천의 지정·변경·해제에 관한 사항

○ 수질개선 주요 추진사업

- 2008년 수질정화식물 추가 식재 : 5,820본
- 2012년 청계천 수질관리방안 학술연구 용역
- 2015년 식생방틀 수생식물 보완 식재 : 1,540본
- 2021년 청계천 수질, 생태 개선사업
- 하상내의 존치된 돌을 모아 쌓아 돌무더기 조성, 돌 틈에 물억새를 식재하여 자연생태형 저수호안 조성



② 악취관리

○ 관리기준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3

구 분	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	관리대상	비 고
부지경계선	15 이하	산책로	청계천은 배출시설이 아니므로 법적관리대상은 아니나, 쾌적한 환경유지를 위해 악취방지법 기준으로 관리
배출구	500 이하	탈취시설 배출구	

○ 2022년 복합악취 측정결과

기준치	시점부 복개구조물 개구부 주변 좌안산책로	삼각동 복개구조물 개구부 주변 우안산책로	삼일교 좌안 산책로	성북천 개구부 주변 산책로	합류 개구부 주변 산책로	정릉천 개구부 주변 산책로	고산자교 우안 개구부 주변 산책로	용답역 하수차집관 거 맨홀주변 좌안산책로
부지경계선 15배 이하	3.6	4.4	3.0	3.3	3.4	3.3	3.7	

○ 악취저감 주요 추진사업

- 청계천 악취저감대책 용역 시행(2020.5~2021.2월)
- 탈취설비 효율 향상을 위한 탈취방식 개선(2021.8~12)

구 분	< 개선 전 - '19년 악취용역 >		→	< 개선 후 >	
	흡입부	배출부		흡입부	배출부
시점부	448	300	→	100	20
삼각동	1442	1000		144	44
고산자교	448	300		30	6

○ 안 제4호 '수표교, 오간수문 등 복원'의 경우, 수표교 복원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15. 12월 '수표교길 복원 주변정비방안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13)을 통해 주변 도시환경정비사업과 등과 함께 2030년에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냈고, 오간수문에 대해서는

13) '수표교길 복원 주변정비방안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결과 (2014.6~2015.12월)

- 주변 도시환경정비사업 등과 함께 2030년 사업추진이 타당
- 향후 기본 및 실시설계 시 수표교의 정밀실측 및 구조안전진단을 수행하여 재사용 및 교체여부를 진단하고, 정밀한 수리검토를 통해 새로운 방안 구상 검토

물길 흐름 등의 사유로 오간수교 옆에 전시하고 있는 상황임.

- 또한, 이 같은 청계천 역사·문화 시설물의 복원 및 문화재 지정 등의 사안은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¹⁴⁾의 심의를 거쳐 보존·관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추진하면 될 것으로 여겨짐.
- 마지막으로, 안 제5호 ‘그 밖에 청계천 주변거리 활성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시가 ‘18년부터 매년 ‘문화디지털 청계천 프로젝트’([표] 참조)를 통해 청계천 활성화를 위한 문화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고, 그 효과 등으로 인해 청계천을 찾는 방문객들이 매년 약 천만 명¹⁵⁾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서 정착단계에 와 있다 하겠음.

[표] 문화디지털 청계천 프로젝트 내역

연 도	사 업 명	주요 사업내용
2018	거리아티스트와 함께하는 문화충전소	·시민참여 문화행사 개최 ·청혼의 벽 프로포즈 행사 ·거리아티스트 공개오디션 및 특별공연
2019	청춘 발전소(發展所)! 도심 속에 흐르는 청년문화예술	·청년 및 일반시민 참여 문화 행사 (일러스트 공모전, 청계천 수상패션쇼)
2020	시민참여 문화발전소 운영	·청계천 스토리텔링 웹툰 공모전 ·청계천 온라인 패션쇼 개최
2021	시민경험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청계천 홍보영상 콘텐츠제작 및 SNS 시민참여 이벤트 개최
2022	디지털로 만나는 미래감성 청계천 판잣집 테마존 시설운영 개선	·청계천 디지털 콘텐츠(메타버스) 제작 및 운영 ·청혼의 벽 기획전시 ·청계천의 자연, 생태 중심 전시
2023	문화를 누리고 행복을 나누는 청계천 문화행사 운영	·시민대상 문화행사 10회 개최 (공연, 패션쇼 등)

14)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8조(지정문화재) 시장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를 제3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할 수 있다.

1. 유형문화재 :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유형문화재 중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2. 기념물 :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기념물 중 향토문화 보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3. 민속문화재 :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민속문화재 중 향토문화 보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15) 청계천 연간 방문객 현황

(단위 : 천명)

구분	2005년	~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방문객	11,840	~	12,565	12,978	8,726	9,746	11,709

- 이 외에 삭제되는 안 제12조의제2항부터 제5항(청계천시민위원회 설치), 제13조(회의), 제14조(분과위원회), 제14조의2(소위원회)는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하여 명시한 것이므로 삭제하더라도 별다른 문제는 없음.

다. 청계천시민위원회 폐지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로의 일원화 검토

- 시는 위원회를 폐지하고 추후 청계천 관리 및 운영 등에 대한 자문역할은 수자원위원회로 일원화하겠다는 입장임.
- 수자원위원회는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법령상 의무설치 위원회¹⁶⁾로 지역 수자원계획의 수립·변경, 수자원의 조사 및 관리, 지방하천의 지정·변경·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¹⁷⁾하고 있으며,

16)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① 지역 수자원정책에 관한 제2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시·도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제29조제4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위원의 해촉·해임에 관하여는 제29조제5항·제6항 및 제31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 「서울특별시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1조(목적) ②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수자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2. 수자원의 조사 및 수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3.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기능으로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표〕 참조)으로 구성되고, 회의는 안건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기별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표] 제16기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 현황

(2023. 3월. 기준)

연 번	구 분	성 명	직 위	소속 및 직책	분 야
1	당연직	권 ○ ○	위 원 장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	내부공무원
2	당연직	유 ○ ○	위 원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	내부공무원
3	위촉직	박 ○ ○	위 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시 의 원
4	위촉직	고 ○ ○	위 원	광운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도시계획
5	위촉직	고 ○ ○	위 원	(주)장맥엔지니어링 고문	상하수도
6	위촉직	노 ○ ○	위 원	(주)제일엔지니어링 부사장	상하수도
7	위촉직	김 ○ ○	女 위 원	서울하천네트워크 사무처장	시민단체
8	위촉직	김 ○ ○	女 위 원	법무법인 제이앤씨 변호사	법 률
9	위촉직	정 ○ ○	위 원	(주)홍익산업개발효산건설 고문	시 공
10	위촉직	정 ○ ○	女 위 원	호서대학교 건축토목공학부 교수	수 자 원
11	위촉직	김 ○ ○	위 원	서울시립대학교 토목학과 교수	수 자 원
12	위촉직	서 ○ ○	위 원	(주)한맥기술 부회장	수 자 원
13	위촉직	서 ○ ○	위 원	(주)유신전무	수 자 원
14	위촉직	김 ○ ○	女 위 원	서울기술연구원 연구위원	수 자 원
15	위촉직	전 ○ ○	위 원	도화엔지니어링(주) 부회장	수 자 원
16	위촉직	최 ○ ○	女 위 원	(주)건림원 실장	조 경
17	위촉직	최 ○ ○	女 위 원	사)한국수생태복원협회 이사	환 경

- 최근 5년간 수자원위원회의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18년 3건, ‘19년 4건, ‘20년 3건, ‘21년 6건, ‘22년 3건으로 매년 차이는 있으나 주기적으로 개최(〔표〕 참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21년과 ‘22년 심의안건으로 ‘청계천~정

릉천 자전거도로 연결사업과 '청계천 폐천부지 관리계획 변경'과 같은 청계천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루어 보면 위원회 폐지 후 청계천에 대한 자문역할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여겨짐.

[표]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운영실적 ('18 ~ '22년)

('23. 4. 7. 기준)

연 도	계		심 의 안 건
	개최건수	안건수	
'18년	3	15	·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 · 고덕천 횡단교량 설치 외 13건
'19년	4	16	· 내부순환도로(월곡ic)구조개선사업 · 도림천복개철거및친수공간조성기본및실시설계 외 14건
'20년	3	4	· 당현천 하천구역 및 폐천부지 변경 결정 · 망월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 외 2건
'21년	6	16	· 청계천~정릉천 자전거도로 연결사업 · 중랑천 홍수방지 및 생태복원 종합계획 수립용역 외 14건
'22년	3	8	· 청계천 폐천부지 관리계획 변경 · 홍제천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외 6건

[붙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

- ◇ 회의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하여 지자체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효율성 제고

I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위원회 수) '21.12월 기준 29,474개로, 매년 지속 증가*
* 23,500개('17년) → 24,874개('18년) → 26,395개('19년) → 28,071개('20년)
- (설치근거) 법령 65.3%(의무설치 55.7%, 임의 9.4%), 조례 30.4%, 기타 4.6%
- (회의개최) '21년 총 110,903회로 위원회별 평균 3.8회 개최
- (기타) 위원 수는 총 400,046명으로 위원회별 평균 13.6명 구성, 위원회 운영경비는 약 456억원으로 위원회별 평균 154.8만원 소요

□ 문제점

- (회의실적 저조) 최근 1년간 회의 미개최 위원회는 전체 위원회 수의 24.2%(7,146개), 최근 3년 연속 미개최 위원회는 12.3%(3,639개)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회의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비율)	22.5%	23.5%	23.6%	25.6%	24.2%

- (비효율 운영) 유사·중복기능 수행 위원회 다수 존재, 위원회 설치 근거가 법령으로 되어 있는 경우 지자체 스스로 정비 곤란

II 위원회 정비 방안

< 기본 방향 >

정비 대상		정비 방안
법령상 임의위원회 / 조례상 위원회	신설 위원회	신설 최대한 억제
	미개최위원회 · 3년간 미개최 · 1년간 미개최	⇒ 폐지 ⇒ 위원회 활성화 또는 정비 계획 수립
	비효율위원회 · 기능 유사·중복 * 연 3회 미만 개최, 구성·운영 개선 필요 위원회 등 · 기능 독립	⇒ 통·폐합 ⇒ (목적달성) 폐지 (한시필요) 존속기한 설정 (내부안건) 협의체 전환 (존속필요·안건少) 비상설화
법령상 의무설치 위원회 (행안부→해당부처, 법령정비 요청)	· 미개최 · 비효율	⇒ (사전) 사전협의제도 활성화 (사후) 폐지 또는 임의규정화 검토

1. 미개최 위원회

□ 3년간 미개최

- (정비방안) 자체적 폐지
- (절차) 지자체 위원회 설치 근거 조례 개정 또는 폐지
※ 예시 : 유통분쟁조정위원회(임의),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조례) 등

□ 1년간 미개최

- (정비방안) 위원회 활성화 또는 정비 계획 수립·제출
- (절차) 위원회 기능·필요성에 대한 자체 검토 후, 활성화 또는 정비

2. 비효율 위원회

□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위원회

○ (정비방안)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와 통폐합

※ 법령에 위원회 설치근거 및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적 규정을 둔 경우, 해당 법령에 통합에 관한 별도규정이 없는 한 통합 불가

○ (절차) 위원회 설치 조례 개정을 통한 근거 마련 필요

- (의무설치 위원회에 통합) 의무설치 위원회의 명칭 사용, 의무설치 위원회의 근거 조례상 기능 보장 및 통합 관련 규정 신설

※ 예시 : 대구 공원위원회(의무설치)에서 도시공원위원회(임의) 기능을 통합해 수행할 수 있도록 공원위원회 근거 조례 개정

- (임의·조례위원회 간 통합) 조례에 통합 관련 규정 신설 필요

※ 예시 : 세종 기업활동지원위원회(임의)에서 여성기업지원위원회(조례) 기능을 통폐합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활동지원위원회 조례 개정 추진

○ (정비유형) 단순 통폐합 또는 통합 후 분과위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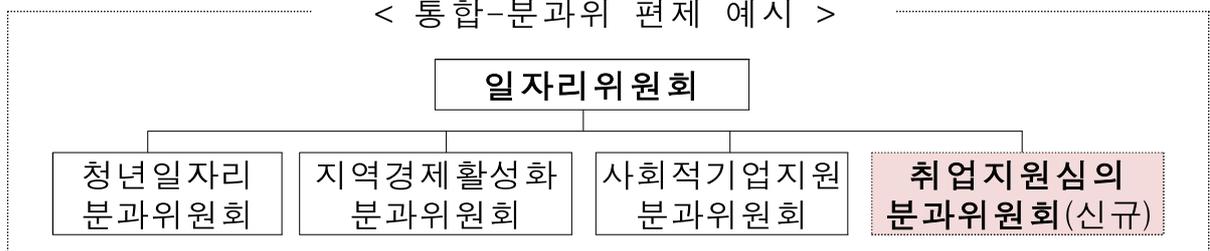
- 원칙적으로 단순 통폐합 추진

- 다만, 독자적 심의가 필요*하여 단순 통폐합이 곤란한 경우,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하위 분과위원회**로 편제

* 동일 위원회에서 수행 가능하지만, 다른 안건과 구분 심사가 필요한 경우 등

** 예시 : 일자리위원회(조례)에 고용지원 등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취업지원심의위원회(조례)를 통합하여 하위 분과위원회로 재편 추진

< 통합-분과위 편제 예시 >



□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

① (폐지) 목적 달성, 수요 해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설치 필요성이 없는 위원회는 조례 개정을 통해 자체적으로 폐지

※ 예시 : 각종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청사건립 완료 후 건립기금운용심의회 등

② (존속기한 설정) 한시적 수요를 다루는 위원회, 영구 존속의 명백한 사유가 없는 위원회는 존속기한(최대 5년)을 조례에 명시

< 조례 개정 예시 >

< 개정 전 >	< 개정 후 >
제7조(설치및기능) 시장은 …… 위원회를 둔다.	제7조(설치및기능) 시장은 …… 위원회를 둔다. <u>제7조의2(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u>

③ (협의체 전환) 지자체 내부 행정에 관한 안전을 주로 심의하여 민간위원 참여 필요성이 적은 위원회는 관계부서 협의체로 전환

※ 예시 : 표창·포상 관련 공적심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심사 등 부단체장, 실·국장, 소속 공무원이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위원회

④ (비상설화) 제도적 절차, 주민 안전 등 필수적 사항*을 다루지만, 안전 발생 빈도가 적은 경우,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

* 주민투표청구 심의, 주민 생명·안전·건강 관련 심의, 사고조사 관련 심의 등

< 조례 개정 예시 >

< 개정 전 >	< 개정 후 >
①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의 자문을 위해…건강도시운영위원회를 둔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좌 동> ④ <u>위원회는 안전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개정)</u>

3. 법령상 의무설치 위원회

- (정비대상) 3년간('19~'21년간) 미개최 또는 비효율적 운영 위원회
- (정비방안) 폐지 또는 임의규정화 검토
- (절차) 지자체에서 정비계획 제출, 행안부에서 해당 위원회 소관 부처에 위원회 근거법령 정비 요청 및 협의 추진

※ 예시(국토부 소관) :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등

III 위원회 설치 내실화

□ 위원회 신설 및 재구성 시 사전검토 강화

- (신설 최소화) 위원회 신설은 최대한 자제하고 필요시 유사 위원회 통합 운영
- (사전협의) 신설 위원회 소관 부서는 위원회 총괄부서와 협의 철저

< 사전협의 예시 >

- ① (위원회 설치 필요성) 설치 근거, 중복·유사 기능 위원회 존재 여부, 상설·비상설 여부 등
- ② (중복 위원 제한) 중복위촉 위원회 수 제한(지방의원 제외)
- ③ (장기 연임 제한) 위원 위촉기간 및 연임 횟수 등
- ④ (위원 구성 다양성) 균형있는 성별·연령, 다양한 직능별 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권고

- (사전운영) T/F형태로 사전운영 후, 실적을 토대로 신설여부 검토
※ 법령상 강행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하는 위원회 신설은 예외
- (중앙부처 사전협의) 지자체 위원회를 설치하려 할 경우, 자치분권 사전협의 등을 통해 필요성 등을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

IV 추진 일정

- 지자체 위원회 정리지침 배포 : 7월 첫째주
- 지자체별 위원회 정비 계획 수립 및 제출 : ~7월말
- 조례 정비 및 실적 점검 : ~12월(매월1회)
- 법령상 의무설치 위원회 부처별 정비 검토 요청(~8월) 및 모니터링(계속)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해당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전원 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72
----------	-----

제출년월일 : 2023년 3월 29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청계천시민위원회는 2005년 복원된 청계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이용사항에 대한 자문을 목적으로 구성되었으나,
- 청계천 복원사업이 18년 경과된 현 시점에서 신규사업 발굴 및 협의사항이 없고 시설물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 미운영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청계천시민위원회와 관련된 제12조(청계천시민위원회 설치), 제13조(회의), 제14조(분과위원회), 제14조의2(소위원회) 조항을 삭제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대상 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5) 시민협력과(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관련 규정): 별도 의견 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사항
- 관련부서 의견조회('22.10.13~10.20.)결과 : 의견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2. 12. 29. ~ 2023. 1. 18.) 결과: 의견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유이정 (☎2133-3898)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부터 제14조, 제14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서식 청계천시설사용허가신청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12조(청계천시민위원회 설치) ①</u> <u>시장은 청계천의 유지관리 및 청계천 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청계천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청계천 이용·관리를 위한 장단기과제 수립</u> <u>2. 시민과 함께 하는 청계천 이용추진상황 평가</u> <u>3. 청계천의 오수 및 수질 관리, 물순환시스템 개선 등 생태환경개선</u> <u>4. 수표교, 오간수문 등 복원</u> <u>5. 그 밖에 청계천 주변거리 활성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p><u>② 위원회는 위원장 3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p> <p><u>③ 위원장은 행정2부시장과 위촉위원 중 호선하는 자 2인으로 한다.</u></p> <p><u>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당연직 위원 : 청계천 업무 관련 실·국·본부장</u>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

2.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공원환경, 생태, 자연성 회복, 수질,
도시, 역사 등에 관한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
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

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4회 이내로 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
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하천관
리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청계천관리
팀장으로 한다.

<삭 제>

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4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위원의 수를 10인 이내로 하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각 분과위원회에는 분과위원장을 둔다.

③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생태·환경 분과위원회
2. 역사·문화 분과위원회
3. 도시·제도 분과위원회

④ 삭제

<삭 제>

제14조의2(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안건의

심도 있는 심의와 분과위원회간의 의견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삭 제>

[별지서식] (신설 2005.09.30)

<삭 제>

청계천시설사용허가신청서			
행사명칭			
사용목적			
사용일시		년 월 일(\) 시 분 ~ 시 분 (시간 분)	
주최자 또는 주최단체의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FAX	()
	성명 (단체명)	생년월일	직업
연락책임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
	성명 (단체명)	생년월일	직업
사용인원		사용장소	m ² (평)
행사내용			
<p>서울특별시청계천이용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사용자 (서명 또는 인)</p> <p>서울특별시장 귀하</p>			
<p>☞ 구비서류 : 1. 행사계획서(사용장비, 시간계획 등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재) 2. 사용 위치도(현장답사 후 평면도 표시) 3. 시설물설치내역 및 원상복구계획서(기타시설물 설치시)</p>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비용추계서 제출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개정조례안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 없음

4. 작성자

- 치수안전과, 방재안전 7급 유이정 (☎2133-3898)